

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
· 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,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
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3항제3호 중 “인정하는”을 “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”으로, “기간”을
“기간(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
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)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
· 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,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
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제21조제6항제3호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”
으로, “기간”을 “기간(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·
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

기간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

제21조(주식취득등 승인) ① ~ ⑤
(생략)

⑥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<단서 신설>

1. 2. (생략)

3.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

심사를 중단한 -----
----- 기간
(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)

제21조(주식취득등 승인) ① ~ ⑤
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.

다만,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,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